

제안요청서

과제명	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
발주기관	통계청

2021년

담당	관련부서	담당자	전화번호	팩스
통계기준과	류창진 사무관	042-481-2057	042-481-2180	
	박혜진 주무관	042-481-2358		

목 차

I. 사업개요	1
II. 추진방향	3
III. 제안 요청 사항	5
IV. 행정사항	7

[서식]

1. 제안서 평가기준	13
2. 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	14
3. 과제수행계획서 서식	19

I. 사업 개요

1. 사업 명: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연구

2. 사업 배경

- 1) 국제표준직업분류* 전면 개정('28년 예정)에 대비하여 해외 직업분류 개정 동향 연구 필요

* (ISCO)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, 2008

- 국제분류(ISCO-08) 분류 구조 및 기준 등 개정 내용을 현행 국내 분류 기준과 비교·분석 필요
- 최신 해외 직업분류 개정 관련 문서 번역·해설 및 연구 추진

- 2) 국내·외 노동시장의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 착수 준비

- 해외 노동시장 직업구조 및 동향을 반영한 개정작업
- 국내 ICTs, AI 기반 기술 융·복합 및 신성장 직종, 디지털 플랫폼에서 출현하는 신직업 사례 수집 및 직무분석 필요
- 국내 법령·제도와 직업분류 기준의 연관성 검토 필요

- 3) 한국표준직업분류(KSCO)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

- 직업분류 대분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개정안 도출을 위한 직업분류 연구 필요
 - (분류) 대분류(1~5) 포괄범위 쟁점사항 및 체계의 타당성 검토
 - (활용) 개정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분류 8차 개정 초안 마련 및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에 공유

3. 사업 목적

-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 착수 준비를 위해 해외 개정동향 분석 필요
- 산업구조 변화 등 국내 노동시장 및 직업 현황 분석 필요
- ICTs, AI 기반 기술 융·복합 및 신성장 직종, 디지털 플랫폼의 신직업이 출현함에 따라 사례수집 및 분석
- 분류 개정을 위해現 직업분류 대분류 포괄범위 및 분류체계 타당성의 전반적인 검토 필요

4. 사업 범위

- 국제표준직업분류(ISCO)와 해외 직업분류 개정 동향 연구
- 국내·외 노동시장 직업구조 및 직업사례 수집 및 분석
-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(KSCO) 대분류 포괄범위 및 분류체계 타당성 검토
- 통계청 사회분류 발전 포럼 등에서 직업분류 관련 정보 공유

5. 사업 방식

- 사업자 선정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6. 사업기간

- 계약체결일 ~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
7. 소요 예산

- 예 산 액: 65,000천원(부가세 포함)

II. 추진방향

1. 추진방향

-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되,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내·외 업무 담당자 및 사회분류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 협업 및 토론을 실시하는 공동연구로 추진
-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로 연구제안서 평가회의를 통해 선정하고, 사업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보고회는 총 3회(착수, 중간 등) 실시하며, 사업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역시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결정

2. 추진일정 * 연구수행 일정은 계약일자에 따라 변경 가능(약 6개월)

업무 내용	1	2	3	4	5	6	7	8	9	10
1. 사업계획 수립										
◦ 연구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										
◦ 일상감사 요청										
2. 연구용역 발주										
◦ 연구용역 발주의뢰										
◦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평가										
◦ 정책연구용역 연구기관 선정										
3. 정책연구용역 수행										
◦ 수행계획서 접수(계약 후 1주 이내)										
◦ 착수 보고회										
◦ 중간 보고 및 평가										
◦ 최종 보고(안) 접수(만료 1개월 전)										
4. 평가·검수·보고										
◦ 최종 보고서 검토·보완										
◦ 연구 보고서 최종 보고(만료 14일 전)										
◦ 정책연구용역 결과 최종 평가(검사검수)										

◦ 사업기간: 계약체결일 ~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
- 중간보고: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
- 최종보고: 계약종료일 1개월 전

3. 제출산출물

- 모든 보고서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·명료하게 기술
- 구체적 제출 일정, 수량, 양식 등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

구 분	보 고 내 용	수량(방법)	시 기
과제수행계획서	- 계약내용에 근거한 연구 계획	과제수행계획서 1부 (e-mail)	계약일로부터 1주 이내
착수 보고서	- 계약내용에 의거, 과제수행 계획 발표 및 추진일정 협의 -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제출	착수 보고서 1부 (e-mail)	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
중간 보고서	- 착수보고 이후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향후일정 협의	중간 보고서 1부 (e-mail) 20부(책자)	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최종 보고서	- 연구 내용 최종 점검 및 평가 보완 의견 반영	최종 보고서 1부 (e-mail) 20부(책자)	계약만료 1개월 전
기 타 산 출 물	- 참고자료 번역본, 해설서 등 수집·분석자료 일체	각 1부(e-mail) 번역본 20부(책자) 해설서 20부(책자)	계약만료 후 2주 이내

4. 과제 관리 및 평가

1) 과제 담당관 지정

-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연구자 선정 등 진행사항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
-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
-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관장

2) 과제 점검 및 평가

-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후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 내용과 추진일정 등 협의
-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
-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
 -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자에게 15일 범위에서 보완 요구
 - 보완이 미비한 경우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 불이익 부과

III. 제안 요청 사항

1. 국제표준직업분류(ISCO) 검토 및 해외 개정 동향 연구

- 국제표준직업분류 구조, 항목, 기준 및 용어 등을 검토하고, 현행 국내 분류기준과 비교·분석
- 해외 국가의 직업분류* 개정 관련 문서 번역,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직업분류 항목 발굴

* 영국 SOC 2020(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, 2020), 미국 SOC 2018, 캐나다 NOC 2016 version 3.1(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) 등

2. 국내·외 노동시장 현황 및 직업 동향 연구

- (해외) 해외 노동시장 직업구조 및 동향 파악 연구
- (국내) ICTs, AI 기반 기술 융·복합 및 신성장 직종, 디지털 플랫폼에서 출현하는 신직업 사례 수집 및 직무분석
- (정책·제도) 국내 법령·제도와 직업분류 기준의 연관성 검토

※ 의료·교육·법률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자격 취득이 필요할 수 있음

3. 한국표준직업분류(KSCO)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

- (분류검토) 대분류(1~5) 포괄범위 쟁점사항 및 체계의 타당성 검토
 - 대분류간 쟁점사항, 분류체계 타당성, 분류간 세분화 또는 통합이 필요한 분류체계 검토
- (해설서) 개요(총설), 용어 정의, 내용 설명, 연계표* 마련
 - * 국제분류(ISCO-08)와 국내분류 개정안의 연계표 포함
- (전문가 검토) 직업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례분석 및 집단토의 및 자문 실시
 - 분야별(과학기술, 문화예술 등) 전문가, 신직업 연구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토의 및 자문

4. 통계청 사회분류 발전 포럼 등에서 직업분류 개정 관련 주제 발표

- 통계청 사회분류 발전 포럼, 사회분류자문위원회 등에서 직업분류 개정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연구진 적극 참여

IV. 행정사항

1.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

가.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

- (기본방침)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 및 공개경쟁에 의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,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
- (적용 규정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계약예규)
- 제안 자격 [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]
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(*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)
 - (참가제한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
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(G2B)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, 연구용역(업종코드 1169)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
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임(단,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)
- 기타사항: 공동계약 허용
 -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공동계약운용요령)에 따라야 함
 -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,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,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

나. 입찰 및 낙찰방식

-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
 - 제한경쟁 입찰 후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*
 - *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'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기준' 적용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
 -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,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, 가격평가는 100분의 20으로 함
 -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
 -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
 -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하며, 기술·가격 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
 - 종합평가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,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 -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
 -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
 -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, 이행일정 및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 - 평가절차
 -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
 -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
 -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자 점수 계산

다. 기술평가 기준

-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
-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: [서식 1] 참조

라. 평가점수 산출방법

◦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

- (각 평가위원의 점수산출)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합산
- (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)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,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

◦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

-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(총 80점의 85%)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평가 실시
- 배점: 20점
- 평가근거 및 평점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(계약예규)

2.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

가. 제안서의 작성방법

- 제안자는 통계청이 제시한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여 『통계청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양식[서식 2]』에 따라 연구 방법 및 과제 수행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
-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,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
- 제안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학력, 경력, 연구논문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

-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‘할 수도 있다’, ‘고려할 수 있다’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나. 제안서 제출방법

- 제출일시: 입찰공고 참조
- 제출장소: 입찰공고 참조
- 제출방법: 입찰공고 참조
- 제출서류: 제안서, 발표자료
-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,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제본하여 제출함

다. 제안 설명회

-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통보
- 참여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: 40분 이내
 - 제안 설명 20분 이내, 질의 및 답변 20분
- 제안 설명회에 불참 시,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 실시
- 제안 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혹은 설명회에서 추가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
- 제안 설명회 관련 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함

라.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

-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

있으며,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
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
-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3. 기타 세부사항

가. 보고 사항

- 연구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기관은 아래의 보고사항을 준수해야 함

구분	보고 내용	시기	방법
착수보고회 개최	- 착수 보고서	계약 후 1개월 이내	대면보고
중간점검(1차)	- 중간점검(1차)	계약일로 2개월 전후	대면보고
중간보고회 개최	- 연구결과 중간보고서	계약 후 3개월 전후	대면보고
중간점검(2차)	- 중간점검(2차)	계약일로 4개월 전후	대면보고
최종보고회 개최	- 연구결과 최종보고서(안)	계약만료 1개월 전	대면보고
진행상황점검회의 개최	- 진행상황 보고 및 협의	수시	구두 및 대면보고

나. 비밀 및 보안

- 연구용역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의 용역수행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
-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주관기관이

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공개할 수 없음

-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

다. 사업 수행 지침

-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,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해야 하며, 발주 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 14일(2주)전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
 - 최종보고서 출력 제본 20부 및 전자파일(보고서, 데이터수집지침서, 기타 녹취록 등 수집·분석 자료 수록, Hwp, Exel 및 PPT형식)
-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 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
-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,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, 학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
-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.
-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, 국가연구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

<서식 1>

제안서 평가기준

평가대상 연구기관: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점수
과제 이해도	◦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	5	
제안기관 수행능력	◦ 과제수행관련 기술보유 수준 ◦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◦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 분야와 본 과제의 관련성 정도 등	15	
연구방향	◦ 과제 해결방향의 적정성	10	
연구내용	◦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안 및 내용의 적합성 ◦ 제안요청사항의 요구 충족도 ◦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법론의 적합성 ◦ 적용이론의 적정성 ◦ 최종목표 달성을 가능성 등	30	
수행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	◦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◦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	25	
일정관리의 적정성	◦ 과제수행절차의 적정성 ◦ 추진일정의 적정성 ◦ 자원배분의 합리성 등	5	
기타사항	◦ 교육훈련 방법, 내용, 일정의 적정성 ◦ 보안관리, 기밀보장에 대한 확신성 등	5	
추가제안사항	◦ 연구 추진 시에 반영함으로써 과제목적 달성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제안	5	
합계		100	

2021년 월 일

(평가) 평가위원: _____ (서명)

(확인) 위원장: _____ (서명)

<서식 2>

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

※접수번호			※ 관리번호

2021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

과제제안서

과제명	국문		
	영문		
연구책임자	소속		성명
연구진구성 (연구책임자포함)	책임 및 공동연구자	연구보조원	계
	명	명	명

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,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작성자: 연구책임자 (인)

○○○ 소속기관장 (직인)

통계청장 귀하

I. 과제 개요 (작성요령은 “☞”로 된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.)

1. 과제명

- ☞ 과제명을 기술한다.

2. 연구배경(또는 필요성)

- ☞ 연구배경 또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.

◦

II. 제안 연구기관 현황

1. 일반현황

- ☞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(개인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사항)을 기술한다.

◦

◦

2. 주요 연구분야

- ☞ 제안기관의 주요연구분야(개인의 경우 전공 및 연구분야)를 기술한다.

◦

III. 제안 내용

1. 제안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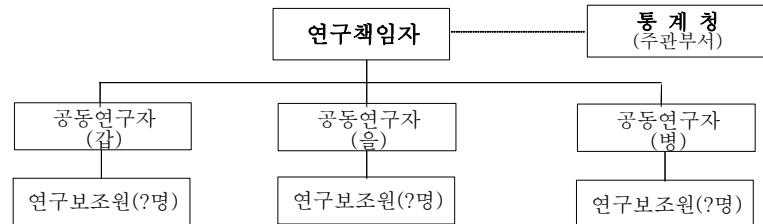
- ☞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해당과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,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.

2. 연구방향 및 내용

☞ 과제에 대한 연구방향, 내용 등을 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기술

3.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

가. 수행조직



☞ 제안서의 표지(붙임3) 외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설명기입을 금지함을 명시한다.

나. 연구원별 업무분장표

구 분	역 할 분 담 내 용	참여율(%)
연구책임자	◦ ◦	
공동연구자(갑)	◦ ◦	
연구보조원(1)	◦ ◦	
	공동연구자(갑, 을, 병 등) 순으로 기술	

4. 연구기간(추진일정)

가. 소요기간: 2021년 월 일 ~ 2021년 월 일(월)

나. 세부추진일정

연구 내용	월 별 추 진 일 정												비 고
	1	2	3	4	5	6	7	8	9	10	11	12	
◦ 자료수집 - 기초자료 - 응용자료													
◦ 자료검토													
...													
◦ 최종보고서 제출													
추진진도(%)													

5. 기타사항

☞ 해당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통계청에 특별히 제안할 사항 등을 기술한다.

[참고자료]

제안서 작성방법 요약(예)

제안서 목차	작성방법	비고
<표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서식2호>를 활용하여 표지를 작성한다. 표지 외에는 참여연구원의 실명이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. 과제 개요와 연구방향 또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. 	
I. 과제 개요		
II. 제안 연구기관 현황		
1. 일반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연구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(개인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사항) 	
2. 주요 연구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를 기술한다. (개인일 경우 전공 및 연구 분야를 기술) 	
III. 제안 내용		
1. 제안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,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. 	
2. 연구방향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을 기술한다. 	
3.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 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한다.(연구원 실명기입 금지: 갑, 을 등으로 기입) 	
4. 연구기간(추진일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. 	
5. 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통계청에 특별히 제안할 사항 또는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첨부 	

<서식 3>

과제수행계획서 서식(계약일로 1주 이내 제출)

※접수년월일			※ 관리번호	
--------	--	--	--------	--

2021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

과제수행계획서

과제명	국문			
	영문			
연구책임자	소속		성명	
연구진구성 (연구책임자포함)	책임 및 공동연구자	연구보조원	계	
	명	명	명	

상기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, 동 계획에 따라 성실히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일을 염두하여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작성자: 연구책임자 (인)

○○○ 소속기관장 (직인)

통계청장 귀하

<과제명>

☞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.

I. 연구개요

☞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.

또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1. 연구목적

2. 필요성

3. (기타 추가할 내용)

II. 연구내용 및 범위

1. 연구대상 및 범위

2.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

3.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

4. 연구결과의 학문적 또는 통계발전에 미치는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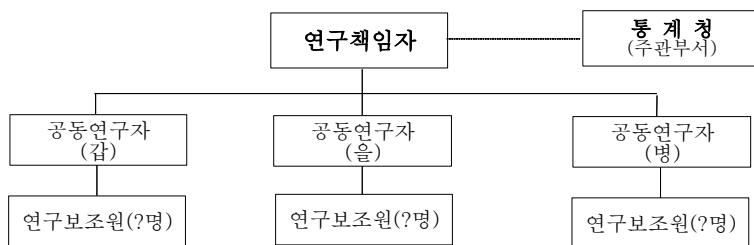
5. 기타사항 (해당사항만 기재할 것)

- ① 학·관의 연계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
- ② 국내·외 연구동향
- ③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

III. 과제수행계획

1. 과제수행조직 및 업무분장

가. 수행조직



*※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, 참여 연구원의 축소는 불가하지만,
계약금액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한 경우는 협의 조정 가능함*

나. 연구원별 업무분장표

구 분	소속	성명	역 할 분 담 내 용	참여율(%)
연구책임자		◦ ◦		
공동연구자		◦ ◦		
공동연구자		◦ ◦		
연구보조원		◦ ◦		

* 연구용역 연구원들의 참여율 관리를 위해 꼭 헤기 작성

참여자 서약서

소 속	총 참여율			
성 명	홍 길 동	총 참여율	00.0%	
발주기관명	사업명	참여구분	참여율	용역 참여기간
통계청	OOO	책임연구원	25.0%	2021.1.1 ~ 2021.6.30.
OOO부 (타 기관)	OOOOO	연구원	12.5%	2021.4.5 ~ 2021.9.30.
OOO청 (타 기관)	OOOOO	책임연구원	12.5%	2021.6.1 ~ 2021.11.30.
합계			00.0%	

* 통계청(본 용역사업)의 계약기간 중에 참여하게 되는 타 사업을 모두 기재

본인은 본 용역사업(업무)을 수행함에 있어서, 타 모든 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서 약 자 소속: OOO 대학교 산학협력단
 성명: 홍 길 동 (서명)

2. 추진일정

가. 소요기간: 2021년 월 일 ~ 2021년 월 일(월)

나. 세부추진일정

연 구 내 용	월 별 추 진 일 정												비 고
추진진도(%)													

IV. 연구효과 및 기타사항

1. 연구효과

2. 기타 사항 및 추가 제안 사항

☞ 기타사항은 과제연구를 위하여 (1) 통계청에 요청하는 사항 (2) 제안요청서에는 없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깊어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시킨 사항 (3) 기타 행정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한다.